

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

TaxSaver

20 . .

(주)한국공인인증등록원

텍스세이버 솔루션 지적재산권자 (주)한국공인인증등록원 (이하"을"이라 칭한다)와 텍스세이버 솔루션 사용자 **홍길동 세무회계사무소**(이하"갑"이라 칭한다)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 목 적 】

본 계약은 "을"이 제작한 텍스세이버 솔루션에 대하여 "갑"에게 이용권을 부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 이용료 및 정보보호 】

1. " 갑 "은 "을"의 이용료 4copy 기준 일금 **480,000원** (VAT별도)를 매 1년마다 지불하기로 한다.
2. 복제는 매 1copy 당 일금오천원(₩5,000)으로 산정하여 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
3. "갑"은 본 계약상의 솔루션에 대한 무단복제 또는 고의로 솔루션 관련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된다.

제 3 조 【 계약기간 및 해지의 환불 】

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**2015년 3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4일**로 한다.
2. 제 1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계약의 해지는 서면통고로 할 수 있다.
3. 환불은 실제 사용한일로부터 요청일까지 "사용일수"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.
4. 사용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재사용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【 기타사항 】

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"을"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"을"이 제공하지 않은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
2. "갑"이 "을"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3. "갑"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및 화재, 수해, 지진 등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인 경우
4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개편에 따른 텍스세이버 프로그램 수정기간
5.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5 조 【 이용요금 결제계좌 】

기업은행: **550-027410-04-011** 예금주 (주)한국공인인증등록원

이용요금 일금 : **480,000원** (₩ **528,000원**)부가세포함

※ 주의 : 입금자명에 **상호를 기재** 하셔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서명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15일

요금결제를 하신 후, 하단 (갑)부분에 명판과 도장을 찍어 주신 후, 02-6499-3369 로 회신해주세요.

(갑)

상 호: **홍길동 세무회계사무소**

사업자번호: **123-45-12345**

주 소: **서울시 중구 세종로 7**

대표이사: **홍길동** (인)

(을)

상 호: (주)한국공인인증등록원

사업자번호: 107-87-23474

주 소: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,

우림블루나인 B동 1406호

대표이사: 김명옥

